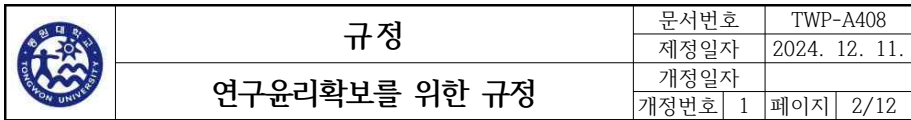


제1장 총칙
제2장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장 연구윤리 진실성 검증 및 처리
제4장 기타
부칙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직 책	주 임	교무학생처장	부총장			총 장
서 명						
일 자						



개정이력

	규정		문서번호	TWP-A408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규정		제정일자	2024. 12. 11.	
			개정일자		
			개정번호	1	페이지 3/1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동원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이 대학교에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연구자, 직원,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구과제 제안, 과제 수행, 과제 결과 보고 및 발표 등 전 범위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4조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10.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제5조(특수관계인 관련 준수사항) ① 연구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자는 연구 시작 전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하여 대학에 제출하고 공동 연구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2. 연구 수행 중 특수관계인이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노트에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3. 공저 논문 발표 전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대학에 제출하고 해당 학술단체에 관련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② 특수관계인과의 공동 연구 및 논문 공저와 관련하여 연구자는 제4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를 준수해야 한다.

	규정		문서번호	TWP-A408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규정		제정일자	2024. 12. 11.	
			개정일자		
			개정번호	1	페이지 4/12

제2장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구성) ①이 대학교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고, 교무학생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및 연구부정행위 관련 제도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윤리 확립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연구부정행위 제보의 접수와 처리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 및 본조사 실시를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5.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조사 결과 승인에 관한 사항
6. 제보자 및 피조사자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7. 연구부정행위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8.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학협력단 직원이 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윤리 진실성 검증 및 처리

제10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규정		문서번호	TWP-A408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규정		제정일자	2024. 12. 11.	
			개정일자		
			개정번호	1	페이지 5/12

-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제11조 (연구부정행위의 제보, 접수 및 처리) ① 제보자는 산학협력단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제보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보한 경우로서 해당 증거가 신빙성이 있고 연구부정 의혹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때에는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 제기된 연구부정행위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제보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의 충분한 보완이 이루어진 경우 정식 제보로 처리한다.

제12조 (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 “제보자”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대학에 알린자를 말하며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②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제보자는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13조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 “피조사자”란 제보자의 제보나 대학 등의 인지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규정		문서번호	TWP-A408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규정		제정일자	2024. 12. 11.	
			개정일자		
			개정번호	1	페이지 6/12

- ② 위원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③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④ 피조사자는 위원회에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이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고, 피조사자가 명예 회복을 신청할 경우 명예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연구부정행위 검증원칙) ①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위원회에 있다. 단, 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②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는 해당 제보내용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 ①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제16조(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요건을 검토하는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착수 후 3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보자 및 피조사자, 제보사실 이관기관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전임교원 중에서 3명의 위원을 선임하고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③ 위원회는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이라도 제19조 제2항에 따른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예비조사위원회는 제보의 내용, 조사결과,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승인하고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규정		문서번호	TWP-A408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규정		제정일자	2024. 12. 11.	
			개정일자		
			개정번호	1	페이지 7/12

제17조(본조사) ① 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본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② 본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조사 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2. 조사 위원 중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을 포함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③ 본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조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본조사위원회는 조사 완료 후 본조사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결과
3. 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4.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5.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6.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7. 검증결과에 따른 판정 결과
8. 연구부정행위에 따른 처리 계획

제18조(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위원회 위원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는 조사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 결정을 하여야 하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기피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조사위원회의 권한)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규정		문서번호	TWP-A408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규정		제정일자	2024. 12. 11.	
			개정일자		
			개정번호	1	페이지 8/12

③ 조사위원회는 총장에게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20조(판정) ① 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결과보고를 받아 이를 심의하고 조사결과를 확정한다.

② 위원회는 확정된 조사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③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는 제보사실 이관기관,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이의신청)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본조사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비조사 결과에 대하여는 예비조사위원회 구성 형태로, 본조사 판정 결과에 대하여는 본조사위원회 구성 형태를 갖추어 조사하여야 한다.

제22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후속조치)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절차를 종료한 후, 총장에게 후속 조치를 건의한다.

제4장 기타

제23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보고) 조사위원회의 결과보고서는 연구지원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제출할 수 있다.

제24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① 연구윤리진실성 검증 조사과정의 모든 기록은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조사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 공개할 수 있으나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25조(비밀의 유지 등) 각 위원 및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관계 교직원 등 조사·심의·의결 및 직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엄수해야 하며,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26조(준용) 연구윤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관계법령을

	규정	문서번호	TWP-A408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규정	제정일자	2024. 12. 11.		
		개정일자			
		개정번호	1	페이지	9/12

준용한다.

부 칙(2024. 12. 11., 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세칙의 폐지) TWI-A401-2 연구진실성위원회 운영 세칙은 폐지한다.

	규정	문서번호	TWP-A408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규정	제정일자	2024. 12. 11.		
		개정일자			
		개정번호	1	페이지	10/12

[별지 제1호 서식]

특수관계인 등의 연구 참여 계획 공개 양식

☐ 연구과제 개요(연구계획서 기준)

과제명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	(직위)
연구비 지원	(지원기관명) (지원액) 원 ※ 별도로 연구비를 지원받은 과제가 아니면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여 연구원	※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연구원 A (성명/소속기관/부서명/직위) - 참여연구원 B (성명/소속기관/부서명/직위) - 특수관계인 등(성명/소속기관/부서명/직위)		

☐ 특수관계인 등의 유형 (해당하는 모든 란에 √ 표시)

가족(4촌 이내)			미성년자		
배우자	자녀	기타	지인 자녀	R&E 프로그램 참여자	기타

☐ 특수관계인 등의 연구과제 참여 목적 (해당 < > 란에 √ 표시하고 간략히 기술)

1. 단순히 연구에 참관하고 배우기 위한 것 (논문 작성과 무관) < >	2. 연구에 참여하여 본인의 아이디어 구현 (논문 작성을 위한 연구 참여) < >

☐ 해당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특수관계인 등의 역할 및 활동계획

※ 필요 시 연구계획서 등 상세계획을 첨부함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규정	문서번호	TWP-A408		
		제정일자	2024. 12. 11.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규정	개정일자			
		개정번호	1	페이지	11/12

[별지 제2호 서식]

특수관계인 등과의 논문 공저 시 사전 공개 양식

연구과제 개요(연구계획서 기준)

과제명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	(직위)
연구비 지원	(지원기관명)	(지원액)	원
※ 별도로 연구비를 지원받은 과제가 아니면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여 연구원	※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연구원 A (성명/소속기관/부서명/직위) - 참여연구원 B (성명/소속기관/부서명/직위) - 특수관계인 등(성명/소속기관/부서명/직위)		

특수관계인 등의 유형 [해당하는 모든 란에 v 표시]

가족(4촌 이내)			미성년자		
배우자	자녀	기타	지인 자녀	R&E 프로그램 참여자	기타

특수관계인 등과의 공저 논문 발표 계획 [해당하는 란에 v 표시]

학술대회(Conference)		학술지(Journal)	
국내	국외	국내	국외
<발표 예정 학술대회 개요> - 학술대회명: - 발표논문명: - 개최지 및 개최기간: - 참여저자:		<게재 예정 학술지 개요> - 학술지명: - 논문명: - 논문 투고 예정일: - 참여저자:	

특수관계인 등이 상기 논문의 저자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유

※ 특수관계인 등이 상기 논문 성과 창출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위주로 기술

--

	규정	문서번호	TWP-A408		
		제정일자	2024. 12. 11.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규정	개정일자			
		개정번호	1	페이지	12/12

연구추진 단계별로 기여한 사항 기술(요약)

구분	연구기획 (연구 설계, 작업의 개념 정립 등)	연구수행 (연구데이터 수집/분석/해석, 기본 원고 작성 등)	원고초안작성 (중요한 내용을 초안하거나 비판적으로 개정)	최종원고확정 (논문 최종 검토 및 승인)
저자 A				
저자 B				
특수관계인 등				

※ 주의사항: 저자 요건을 갖춘 개인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즉 저자 표시 대상 개인과 연구과제 계획서에 표기된 참여연구원이 일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자별 기여율 산출 및 확인 내역 <저자 간 합의 사항>

구분	연구 기획	연구 수행	원고초안 작성	최종원고 확정	전체 기여도	확인 서명
저자 A	()%	()%	()%	()%	()%	
저자 B	()%	()%	()%	()%	()%	
특수관계인 등	()%	()%	()%	()%	()%	
계	30%(*)	40%(*)	20%(*)	10%(*)	100%(*)	

* 항목별(연구추진 단계별) 기여율 가중치는 연구기관이나 연구과제의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함

연구윤리 확인내용 [예시]

항목	내용 (예시)
저자 임의변경과 부정한 추가 방지	저자 일동은 저자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제1저자는 저자 A, 공저자는 저자 B, 저자 C(특수관계인 등)임을 확인합니다.
표절 및 이중게재 방지	표와 그림은 저자 B에 의해 주로 작성되었습니다. 표절 검사 프로그램 결과는 저자 C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어떤 문장, 문단도 무단으로 표절한 부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번역을 이용한 표절의 방지	논문 제목, 키워드, 주요 변수, 가설, 연구모형의 독창성을 보증합니다. 한글 초록과 영문 Abstract 모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영문 번역 이전의 한글 원고로도 표절 검사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실증분석 연구윤리 위반 방지	실증분석에 사용된 원본 데이터는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표와 그림에 사용된 자료의 출처를 잘 표기하였습니다.
짜깁기 표절 방지	본 보고서와 가장 유사한 선행연구는 ()입니다. 아이디어 제안은 저자 A가 하였고, 이를 저자 C가 보완하였습니다.

년 월 일

위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저자 성명	저자 A	저자 B	특수관계인 등
확인 서명			